

「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이 「농어촌정비법」으로 제정되면서 농지 개량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,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과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나, 1995.12.19.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「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「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」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